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가합6162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A

변론 종결2024. 10. 17.

판결 선고2024. 1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7,445,478원 및 그중 136,873,580원에 대하여는 2024. 1. 20.부터, 456,344,500원에 대하여는 2024. 1. 23.부터, 156,101,450원에 대하여는 2024. 3. 29.부터, 183,774,250원에 대하여는 2024. 4. 5.부터 각 2024. 4. 26.까지 연 1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수출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23. 4. 20. 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가 수출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신용보증한도를 135,000,000원, 보증기간을 2024. 4. 29.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 신용보증한도를 180,000,000원, 보증기간을 2024. 5. 5.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②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가 수출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신용보증한도를 450,000,000원, 보증기간을 2024. 5. 16.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제3 약정'이라 한다), 신용보증한도를 153,000,000, 보증기간을 2024. 5. 16.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제4 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약정의 보증방식은 '회전보증'으로서 보증서에 기재된 신용보증한도와 보증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B 또는 C의 대출금 상환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것이고, 피고는 B 또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각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7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즉시 이를 공사에 통지하고 공사가 보증하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겠으며, 이 경우 공사가 사전통지·최고 등이 없이 사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6. 공사의 본인을 위한 신용보증부 대출 관련 은행이 다수인 경우 그 중 어느 은행으로부터라도 공사와 은행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제8조(보증채무 이행금 등의 상환)

① 본인과 보증인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신용보증부대출 원금 및 약정이자)
2. 보증채무 이행으로 공사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② 본인과 보증인은 제1항의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금액에 공사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③ 본인과 보증인은 공사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에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1.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사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2) 원고는 2023. 4. 24. B 또는 C에게 이 사건 각 약정에 대하여 각 수출신용보증서(이하,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B 또는 C의 이 사건 각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1) B는 2023. 4. 2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보증서를 담보로 1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2023. 10. 2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보증서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2) C은 2023. 5. 1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3 보증서를 담보로 5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3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2023. 10. 24. E으로부터 이 사건 제4 보증서를 담보로 17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4 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B 또는 C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등

1) D은 2023. 11. 21. 원고에게 B의 기한이익상실을 사유로 이 사건 제1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하였고, E은 2023. 11. 16.경 원고에게 B의 이자연체를 사유로 이 사건 제2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하였으며, 중소기업은행은 2023. 12. 4. 원고에게 C의 어음부도를 사유로 이 사건 제3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하였고, E는 2023. 12. 21.경 원고에게 C의 이자연체를 사유로 이 사건 제4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24. 1. 19. D에게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대출금 원금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873,589원 합계 136,873,580원(원 이하 버림)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제1 대위변제'라 한다)하였고, 2024. 4. 4. E에게 이 사건 제2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2 대출금 원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3,774,253원 합계 183,774,250원(원 이하 버림)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제2 대위변제'라 한다)하였으며, 2024. 1. 22.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제3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3 대출금 원금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6,344,500원 합계 456,344,500원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제3 대위변제'라 한다)하였고 2024. 3. 28. E에게 이 사건 제4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4 대출금 원금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3,101,451원 합계 156,101,450원(원 이하 버림)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제4 대위변제'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 대위변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위변제'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2023. 12.경부터 2024. 1.경까지 이 사건 각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4,403,140원(= 광주지방법원 2023카단56288호 1,189,890원 + 광주지방법원 2023카단56617호 1,616,050원 + 광주지방법원 2023카단56797호 944,220원 + 광주지방법원 2024카단50004호 652,980원)을 지출하였다.

라. 국내보상요령

원고가 2023. 9. 5. 개정한 국내보상요령 중 연체이율 관련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0조(연체이율 적용)

- ① 관련 약관 및 약정서 또는 규정 및 이 요령에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한 연체금 산정 시 적용할 연체이율은 중소기업은 연 10%, 중견기업은 연 11%, 대기업은 연 12%로 한다.
- ③ 연체이율의 적용은 보험금지급일 또는 보증채무이행일과 공사에서 정한 납부기일 중 늦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31조(구상통보) 아래의 각 구상금별 납부기한까지 채무관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율 적용시점부터 공사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변제촉구문을 통보시기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채무관계자에게 발송한다.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신용보증(NEGO) 등 보증종목	보증채무이행시	보증채무이행일	보증채무이행일 다음날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 또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원고가 구상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937,445,478원(= 이 사건 각 대위변제금 합계 933,093,780원¹⁾ + 보전조치 비용 4,403,140원 -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51,442원) 및 그중 이 사건 제1 대위변제금 136,873,58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²⁾인 2024. 1. 20.부터, 이 사건 제3 대위변제금 456,344,5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4. 1. 23.부터, 이 사건 제4 대위변제금 156,101,45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4. 3. 29.부터, 이 사건 제2 대위변제금 183,774,25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4. 4.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4. 4. 26.까지 이 사건 각 약정 제8조 제2항, 국내보상요령 제30조 제1항이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지혜

판사전경민

판사채지웅

1) = 이 사건 제1 대위변제금 136,873,580원 + 이 사건 제2 대위변제금 183,774,250원 + 이 사건

제3 대위변제금 456,344,500원 + 이 사건 제4 대위변제금 156,101,450원

2) 이 사건 각 약정 제8조 제2항, 국내보상요령 제31조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